

□ 지구단위계획(발체)

도면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 획 내 용				
산업시설 (I1 ~ 물류시설 I2)	i1~i48, i52~ i53-6, i53-8 ~i56	용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장 및 창고시설(도금업,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, 위험물품 보관업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(산업전시장, 박람회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(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) • 교육연구시설(i1-5,6에 한함) • 방송통신시설(i53-1~6에 한함)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5114(태양력발전업) : 태양광발전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시행령[별표1]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(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한함) - 단, i22-7은 상기산업분류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과 연료전지발전사업에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한함 			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
		규모	건폐율	• 80% 이하			
			용적률	• 350% 이하			
		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층이하 • 6층이하(i56-1에 한함) • 8층이하(i53-1~6에 한함) 		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붕은 경사지붕(2/10 이상) 또는 곡면지붕으로 조성하되,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%이상 녹화를 권장 • 동서연결녹지변 녹지축에 접한 블록내의 건축물은 녹지색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녹색계열의 지붕으로 조성 				
	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한계선(※지구단위계획도참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국지도로변 : 2~3m 이격 - 주요 간선도로변 : 3m 이격 - 동서연결녹지변 : 5m 이격 ※ 건축한계선 내 시설물 설치는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공작물, 가설건축물, 광고판 등 시설물 설치 제한, 단 주차장, 조경, 투시형 펜스·담장, 생활타리는 허용 ※ 동서연결녹지변 5m 건축한계선 내에 적재를 금하며 연결녹지에 준하는 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				
		색채	구분	주조색	보조색	강조색	
			I1 I2	YR계열(1~10), Y계열(1~10), GY계열(1~10), G계열(1~10), BG계열(1~10), B계열(1~10), N계열, 명도 5~9, 채도 8이하 권장	-	-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. •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					